

제 286회 임시회
2010. 2. 3(수)

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교육사회위원회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0. 2. 3(수)

교육사회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교육감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0년 1월 14일
- 회부일자 : 2010년 1월 15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2010. 1. 25, 제28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
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질의·토론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 : 연희지 기획관리국장)

가. 제안이유

- 시·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이 재 산정 고시(교육과학
기술부 고시 2009 - 40, 2009. 12. 14)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
소속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변경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,879명에서 39명이 증원된 2,918명으로 함(안 제2조)
-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 : 변동없음
- 본청, 지역교육청, 직속기관, 지역소속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: 2,866명⇒ 2,905명(증 39명)

3. 검토보고 요지

(교육사회전문위원 윤양한)

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

-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 제3조제4항에 의하여 2009. 12. 14.자로 고시된 2010년~2011년 시·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충청북도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책정하기 위한 것으로,
-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매년 2년마다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을 산정하여 고시하고 있는데
 - 공립의 학교수·학급수 및 지역교육청수 등을 독립변수로 하는 정원 산식에 의하여 시·도교육청별로 공무원 정원을 산정하며,
 - 교육감은 표준정원 산식에 의해 표준정원 범위 안에서 정원을 책정함
 - 교육행정 수요의 급격한 증가 등 부득이 한 경우에는 표준정원의 3% 범위 내에서 보정정원을 운영할 수 있음.

《표준정원 및 보정정원 조정 배정 현황》

- 표준정원 : 2,918명(2009년 표준정원 대비 39명 증원)
- 보정정원³⁾ : 3,005명(표준정원 ×1.03)
-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 규모

(단위:명)

표준정원			보정정원			비고
2009년	2010년	증원정원	2009년	2010년	증원정원	
2,879	2,918	39	2,965	3,005	40	

□ 따라서,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○ 행정수요에 맞는 인력조정 및 효율적 배치,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교육청 운영을 위해,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4조 및 제19조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일괄적으로 증원·조정된 표준정원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○ 다만, 증원되는 39명에 대한 직급별 인원 책정 등 향후 운용 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3)보정정원 : 급격한 행정수요 발생에 신속적 대응 등 시·도교육청의 자율성 부여를 목적으로 표준정원의 3%를 더한 정원으로, 사용 시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과 정원 조례 개정 후 사용해야 하며, 국고에서 인건비 지원이 되지 않는 정원임

〈참고자료〉

시·도교육청 정원책정 현황

교육청	'08년 표준정원	5% 감축정원	'09년 운영정원	'10-'11년 표준정원	'10-'11년 보정정원
서울	7,154	-358	6,796	6,838	7,043
부산	3,679	-184	3,495	3,495	3,599
대구	2,558	-128	2,430	2,455	2,528
인천	3,138	-157	2,981	3,073	3,165
광주	1,622	-82	1,540	1,601	1,649
대전	1,797	-90	1,707	1,711	1,762
울산	1,596	-80	1,516	1,542	1,588
경기	12,569	-629	11,940	12,247	12,614
강원	3,780	-189	3,591	3,591	3,698
충북	3,031	-152	2,879	2,918	3,005
충남	4,069	-204	3,865	3,959	4,077
전북	3,983	-200	3,783	3,783	3,896
전남	4,853	-243	4,610	4,610	4,748
경북	5,139	-257	4,882	4,882	5,028
경남	5,374	-269	5,105	5,158	5,312
소계	64,342	-3,222	61,120	61,863	63,712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2,879명"을 "2,918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"2,866명"을 "2,905명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원의 총수)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2,879명 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(생략) 2. 본청, 지역교육청,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: 2,866명	제2조(정원의 총수)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2,918명 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(현행과 같음) 2. 본청, 지역교육청,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: 2,905명

관계법령 발취

□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(개정 2009.7.22 대통령령 제21632호)

제14조 (표준정원의 책정) ①교육감은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정원(이하 "표준정원"이라 한다)의 범위안에서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.

②교육감은 교육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 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또는 7월에 하여야 한다.

④지방자치단체의 폐치·분합, 경계변경 또는 종류의 변경으로 인하여 시·도교육청의 표준정원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시·도교육청의 표준정원 산정방법이 마련될 때까지 학교수·학급수 및 지역교육청수 등이 유사한 다른 시·도교육청의 표준정원을 참작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정원에 의할 수 있다.

제19조 (정원의 규정) ①시·도 교육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04.1.29>

- 1.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
- 2. 본청, 지역교육청, 직속기관,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

②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범위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기관별로 당해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□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규칙(개정 2008.3.4 교육과학기술부령제1호)

제3조 (표준정원의 산정) ①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·도교육청별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은 별표 1의 산식에 의하여 정한다.

②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·직급별·직렬별로 정원관리현황을 작성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교육

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영 제14조제2항에서 "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 정원"이라 함은 표준정원에 보정비율 1.03을 곱하여 산출한 정원(이하 "보정정원"이라 한다)을 말한다.

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을 매 2년마다 8월중에 산정하여 고시한다.

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산정함에 있어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버린다.

[별표 1] <개정 2004.1.30>

시·도교육청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산식(제3조제1항관련)

<p>1. 특별시·광역시 현정원에 대한 조정정원+(5.793702×학교수 증감분×0.6+0.1919011× 학급수 증감분×0.4)×1.15+70.9×2국 6과 지역교육청 증감분 +57×4과 지역교육청 증감분+40.3×2과 지역교육청 증감분</p> <p>2. 도 현정원에 대한 조정정원+(5.022132×학교수 증감분×0.6+0.3594281× 학급수 증감분×0.4)×1.15+61.6×2국 6과 지역교육청 증감분 +51.5×4과 지역교육청 증감분+31.6×2과 지역교육청 증감분</p>

비 고

1. 현정원에 대한 조정정원은 각각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.

가. 특별시·광역시

$$[\text{현정원} + \{1.720094 \times (\text{학급수} \div \text{학교수}) \text{의 자연로그값} \times \text{학교수} + 168.1659 \times 2\text{국}6\text{과} + \text{지역교육청수} + 177.8311 \times 4\text{과} + \text{지역교육청수} + 105.4566 \times 2\text{과} + \text{지역교육청수} + 161.7123\}] \div 2$$

나. 도

$$[\text{현정원} + \{1.910288 \times (\text{학급수} \div \text{학교수}) \text{의 자연로그값}\} \times \text{학교수} + 123.1787 \times 2\text{국}6\text{과} + \text{지역교육청수} + 49.33297 \times (2\text{과} + \text{지역교육청수} \times 4\text{과} + \text{지역교육청수}) + 225.1432] \div 2$$

2. 학교수·학급수 및 지역교육청수는 현정원을 조정한 연도의 4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

3. 학교수·학급수 및 지역교육청 증감분은 각각 현정원을 조정한 연도에 대한 당해연도의 증감분을 말하며, 해당연도의 4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

□ 시·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(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, 2009.12.)

구 분	표준정원	보정정원	비 고
충청북도교육청	2,918	3,005	보정정원은표준정원의 3%